

의안번호	2209747
의 퇴 인	이병진 의원
회 답 일	2025. 7. 8.
추 계 번호	25B2241

해외농업 ·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신설)	재량규정
3	안 제31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편성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25~'29)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으로 109백만원 집행('24)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28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31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신설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무조정실 예규 제27호)」에 따라 평가를 시행 중임 * ODA 사업 평가 관련 예산(평가용역비): '25년 350백만원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할 경우, 유사 기관의 평가지침 등을 활용하여 현재 평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8조제4항 신설)

- 개정안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중합계획(2023~2027)」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을 육성 중으로,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¹⁾ 중 인력양성을 위해 2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 농지관리기금(5032-300)

[표 1] 해외농업자원개발 인력 육성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5032-300)	지역분야별 특 화전문교육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선진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제공, 전문 기술·제도 등 지역·분야별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실무 역량 강화	55
	국제곡물교육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사업과 연계 활성화 유도, 국제곡물 선물거래 및 유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100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농업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	87
	진출기업 정기 보수교육	해외농업 자원개발 진출기업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관련 법령, ESG, 검역 관련 교육 등 사후관리 교육 추진	20
합계			2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학과·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해외농업 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학부,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 규모 및 운영비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²⁾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학부,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조직

2)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의 설치는 각 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학부 및 학과, 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현행법에 따른 해외농업 개발협력 관련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내용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농지관리 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투자환경조사 및 컨설팅, 해외농업 역량강화교육,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농업자원개발 전주기 맞춤형 지원	2,835
농지관리 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융자 지원	6,000
일반회계	국제농업협력(ODA)	개도국과의 농업협력을 증진하고 수원국의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수원국과의 양자사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	243,926
일반회계	국제기구분담금(ODA)	공적개발원조(ODA)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	28,3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